

검 토 보 고 서

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
「지방의회법」제정 촉구 건의안

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「지방의회법」 제정 촉구 건의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박지현 의원 등 11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지방의회는 헌법을 근거로 설치된 헌법기관이며, 주민의 대표기관, 입법기관, 지방행정의 통제 및 정책결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하고,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왔음
- 지난 2021년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을 통해 인사권 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등 독립성과 전문성이 일부 확보되었으나,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에 필요한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음
-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하고,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
- 이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한 자치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의 입법적 근거와 「국회법」에 준하는 기본법 형태의 지방의회 업무, 조직, 운영 등 지방의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「지방의회법」의 제정은 필연적임

4. 검토내용

- 1991년 도입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권익향상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,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, 복잡화되면서 단체장의 역할이 강화된 반면, 이를 제대로 견제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임
-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전면 개정된 「지방자치법」에는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요구해 왔던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일부 포함돼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음
-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독립된 예산편성 권한과 자율적 조직구성 권한이 없는 등 현재 지방자치법 구조로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.
이에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되지 않도록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완할 방안이 필요함
- 본 건의안은 올바른 지방자치제도 확립을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한 「지방의회법」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그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<의장협의회>

2024. 5. 27. 제3차 임시회

- (운영위원장)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「지방의회법」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(원안가결) / 회신결과 : 지속검토

2024. 6. 24. 제4차 임시회

- (운영위원장)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「지방의회법」 제정 촉구 건의안(원안가결) / 회신결과 : 신중검토

2024. 10. 6. 제6차 임시회

- (운영위원장)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율성 독립성 보장을 위한 「지방의회법」 제정 촉구 건의안(원안가결) / 회신결과 : 신중검토

2025. 2. 20. 제1차 임시회

- (광주) 지방의회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(원안가결) / 회신결과 : 미회신

<충북도의회>

2021.07.08.

-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「지방의회법」 제정 촉구 건의안

<운영위원회>

2025.02.26.

- 제22대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처리 건의안(검토중)